**EU위원회**

**EU 인신매매피해자 권리**

-------------------------------------------------------

**서문**

Cecilia Malmstrom, 유럽연합 내무 위원장

“인신매매는 우리 시대의 노예제도이며,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입니다. 이는 심각한 범죄로, 모든 국적의 여성, 남성, 소녀들과 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피해자들에게 평생동안의 심각한 피해를 끼칩니다.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돕기 위해, 그리고 그들이 최대한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럽연합 입법절차는 그들에게 법률지원, 의료지원, 임시 거주 등 다수의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들이 알려지고 효율적으로 실제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피해자들과 각 분야에서 활동 중인 활동가들에게 명료하고 접근 가능한 정보가 필요할 것입니다.아무쪼록 피해자들이 필요로 하고 받아 마땅한 지원과 보호를 위하여 이 유럽연합 인신매매피해자 권리에 관한 개관이 유럽연합 회원국 당국과 그들의 일상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들어가며**

인신매매에 대해 다루는 것은 유럽연합과 그 회원국들의 우선순위이다. 유럽 연합의 접근은 인신매매가 한쪽 성에만 국한된 것에 대한 본질을 인식한다. 유럽연합은 피해자와 그들의 인권을 중심에 두며, 아동친화적인 접근의 필요성도 인식한다. 이는 여러 학문 분야에 걸친 공동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인신매매 피해자들에게 명료하고 일관된 그들의 권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러한 권리의 범위는 (응급) 지원과 의료서비스에서부터 노동권과 사법접근권과 변호사선임권, 그리고 보상을 청구할 권리에 이른다. 본 문서는 유럽인권협약, 유럽연합 지침, 유럽인권재판소 판례법에 근거하여 이러한 권리들에 관한 개관을 제공한다. 각 장의 끝에는 아동에 대한 추가적인 권리가 포함되었다.

본 문서는 유럽연합 입법에 근거한 권리에 대한 개관을 찾는 피해자들과 변호사들 및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권리에 대한 유사한 개관을 개발하려는 회원국들을 위해작성되었다. 유럽연합 입법은 최소한의 기준을 제공하며, 회원국들은 적절한 선에서 이러한 기준을 넘어설 수 있다.

유럽연합 입법에 기반한 권리들 중 본 문서의 발행 후 회원국들에 의해 국내법으로 변환될 권리들은 본문에서 이탤릭체로 표시되었다.

본 문서의 권리과 의무목적에서, ‘아동’은 18세 이하의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피해자의 나이가 분명하지 않고 피해자가 아동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을 경우, 피해자는 아동으로 간주된다.

본 문서의 목적상 ‘피해자’는 인신매매를 당한 개인을 일컫는다.

‘가해자’ 혹은 ‘범죄자’는 본 문서의 목적상 인신매매로 기소당하거나 유죄가 입증된 개인 혹은 개인들을 일컫는다.

‘제3국국민’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시민이 아닌 개인이다.

-------------------------------------------------------

‘인신매매’는 EU지침(Directive 2011/36/EU)제2조에서 정의되었다:

1.협박이나 무력의 사용 혹은 강압, 사기, 기만 등의 수단에 의한 채용, 수송, 이송, 혹은 은닉 등의 개인에 대한 지배권을 교환하거나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착취를 목적으로 다른 개인에 대한 지배권을 갖는 개인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권력이나 취약성의 위치를 남용하거나 금전 또는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는 것을 포함한다.

2.취약성의 위치란 관계자가 실질적이거나 수용할 수 있는 대안 없이 학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일컫는다.

3.착취는 최소한 타인의 매춘 혹은 기타 성적 착취의 형태를 포함하며, 구걸, 노예제도, 노예제도와 흡사한 행위, 노역, 혹은 범죄 행위의 착취, 장기적출을 포함한 강제된 노동 혹은 용역을 포함한다.

4.인신매매 피해자의 착취에 대한 동의는 의도되었거나 실질적이었다는 것과는 상관없이 제1단락에서 나열된 수단들이 사용되었다면 무관하다.

5.제1단락에서 나열된 수단들이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1단락에서 언급된 행위가 아동을 포함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는 인신매매 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

**유럽연합 인신매매 피해자 권리**

본 문서는 피해자들과 활동가들, 그리고 유럽연합 회원국들에게 유럽연합법 하의 피해자의 권리에 대해알리려한다. 이는 유럽연합 법령의 법적구속력 있는 해석으로 구성될 수 없다. 모든 권리는 법률상 규정과 사용 법규의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제1장: 원조와 지원**

* 1. 관할 당국이 합리적인 이유로 피해자들이 인신매매 되었다고 생각할 때 피해자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조와 지원을 받을 자격이 부여된다.
	2. 피해자들은 형사 절차의 이전이나, 진행 중일 때에나, 절차 종료 후 적절한 시점에 원조와 지원을 받을 자격이 부여된다.
	3. 원조와 지원은 피해자의 범죄수사와 기소 및 재판에 대한 협조에 조건하여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만일 피해자가 관련 회원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지 않는 경우, 최소한 숙려 기간 동안에는 피해자에게 원조와 지원이 조건 없이 제공되어야 한다.
	4. 원조와 지원은 지원사항을 피해자가 충실히 고지 받고 동의할 경우에만 제공된다.
	5. 피해자들은 적어도 최저 생활 수준, 적절하고 안전한 거처와 물질적 원조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6. 피해자들은 심리적 지원, 상담, 정보 등의 필요한 의료적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7. 피해자들은 필요할 경우 번역 및 통역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8. 특별한 필요가 있는 피해자들 (특히 임신, 건강, 장애, 신체적 혹은 정신적 질병 또는 신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을 겪었던 경험과 관련한 필요의 경우)은 돌봄을 받아야 한다.
	9. 피해자들은 그들의 필요에 따라 무료로 형사 절차의 이전이나, 진행 중일 때에나, 절차 종료 후 적절한 시점에 피해자를 위해 행동하는 비밀 피해자 지원 서비스에 접근권을 가진다. 가족 구성원들은 피해자에 가해진 범죄 행위의 결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정도와 그들의 필요에 따라 피해자 지원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
	10. 전문가 지원 서비스는 아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a) 협박과 복수와 같은 임박한 이차적이고 반복적인 희생의 위험에 대비해 안전한 곳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를 위한 피신처 혹은 적절한 임시 거처; (b) 성폭력 피해자와 성별 기반 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외상치료와 상담을 포함한 특정한 요구를 가진 피해자에 대한 표적 및 통합지원
	11. 제3국의 국적자인 피해자들은 숙려기간과 회복 기간에 대한 정보를 통지 받아야 하며, 국제적인 보호를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 통지 받아야 한다.
	12. 피해자들은 망명을 신청할 권리가 있으며, 국제적인 보호를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과 강제송환 (사망, 고문 또는 기타 비인간적이고 치욕스러운 대우 혹은 형벌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나라로 돌려보내지는 것)에서부터 보호된다는 사실에 대해 통지 받아야 한다.

**아동 피해자**

1.13 아동 최선의 이익은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그 평가는 개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의 나이, 성숙도, 관점, 필요 사항과 관심 사항을 고려한 아동친화적인 접근이 우선해야 한다. 아동과 친권자, 또는 기타 법정대리인은 특히 아동 위주의 어떠한 수단이나 권리가 있다면, 이에 대해 통지 받아야 한다.

1.14 아동 피해자들은 그들의 특수 상황에 기반하여 원조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회원국들은 아동 최선의 이익에 대한 평가에 기반한 지속성 있는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해야한다.

1.15 친권자가 아동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거나 아동을 대변하는 데에서 배제된 경우에는 아동 피해자에게 보호자나 대변인이 지정된다.

제2장: 인신매매 피해자의 보호

**형사 소송 절차에 앞선 보호 절차**

2.1 피해자들은 개인 위험 평가에 기반하여 적절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개인 평가는 시기적절해야하며, 구체적인 보호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것과, 형사 절차 동안의 반복적인 위협과 보복에 대한 특정한 취약성으로 인한 이차적이고 반복적인 피해에 의한 특별조치로 혜택을 받을지의 가부와 혜택의 정도를 결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어야 한다.

2.2 국법에 의거하여,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기소되어서는 안 되며, 인신매매에 대한 직접적인 결과로서 범죄행위를 저지르도록 강요되어 연루된 범죄 행위에 대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2.3 피해자의 개인정보는 관할 당국의 업무 체제 내에서 특정, 명백하고 합법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수집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가 수입된 것과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만 처리될 수 있다. 이러한 정보의 처리는 (정보가 수집된 목적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합법적이고, 적절하고, 관련성 있으며, 과도하지 않아야 한다.

2.4 피해자의 개인 정보는 수집시의 목적을 위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시점에 삭제되거나 익명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2.5 피해자들은 관련 당국 (경찰, 사법 당국 등)과의 최초 접촉시에 가급적 흔히 이해될 수 있는 언어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갖는다.

2.6 피해자들이 제공받을 권리를 갖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 피해자들이 의지할 수 있는 서비스의 유형 또는 기관

\*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원조

\* 위법행위 신고기관과 그 방법

\* 위법행위 신고 후의 절차와 절차와 관련한 피해자들의 역할

\* 어떠한 상황 하에서 어떻게 보호를 구할 수 있는지

\* 어떠한 조건 하에서 어느 정도까지 법률상담, 법률구조 또는 기타 종류의 자문에 접근할 수 있는지

* 배상을 위해 필요한 요건
* 피해자들이 타 회원국의 주민일 시, 피해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유효한 특별제도
* 형사 소송 절차 참여의 결과로 발생한 비용에 대한 비용을 배상 받는 방법

**형사 소송 절차 중과 후의 보호 절차**

2.7 관할 당국의 개인 평가에 따라, 피해자들은 일정 상황 하에서 제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특정 관리를 받을 수 있다. 즉, 조사 중 불필요한 인터뷰, 기소 또는 재판의 반복이나 피해자와 가해자의 시각적 접촉, 공개된 법정에서의 증언과 피해자의 사생활에 대한 불필요한 질문을 피하는 것이다.

2.8 피해자들은 지체 없이 보상을 청구할 목적을 포함한 법률 상담과 법적 대리에 대한 접근권을 가진다.

2.9 법률 상담과 법적 대리는 피해자가 충분한 재원을 갖지 못하였을 경우 무료로 제공된다.

2.10 피해자들은 관련 형사 사법제도 내의 역할에 따라 재정신청을 할 권리가 있다.

2.11 피해자들은 형사소송절차를 이해하고 절차 내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서신을 장애 등의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한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받을 권리를 가진다.

2.12 피해자의 이익이나 절차에 반하지 않는 선에서 피해자들은 특정한 상황 하에서 피해자가 관할 당국과의 첫 접촉에서 피해자가 이해하고 이해되는 것을 보조해줄 사람을 선택하여 동반할 수 있다.

2.13 피해자들이 정식 항고 소송을 할 경우, 피해자들은 항고 소송에 대한 확인서, 번역 또는 항고 소송에 필요한 어학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14 피해자들은 그들이 정식 항고 소송의 결과인 형사 소송 절차 정보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는 것에 대해 희망에 따라 불필요한 지체 없이 통지 받아야 한다. (조사의 중단 또는 가해자를 기소하지 않을 결정, 가해자에게 적용되는 혐의, 재판 일시 및 시간, 최종 판결과 형사 소송 절차의 상황)

2.15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구금에서 석방되거나 탈출할 경우 지체 없이 통지 받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16* 피해자들의 형사 소송 절차에서의 공식적인 역할에 따라, 피해자들은 수사 기관과 사법 기관의 형사 소송 절차 내의 인터뷰 혹은 심문 중이나 법정 심리에서 무료로 통역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17 피해자들의 형사 소송 절차에서의 공식적인 역할에 따라, 피해자들은 형사 소송 절차에서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무료로 통역받을 수 있다.

2.18 통역사의 참석이 피해자의 권리 행사 또는 절차 이해를 위해 요구되지 않는 경우 피해자들은 화상회의, 전화, 또는 인터넷 등의 통신 기술을 통역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2.19 피해자들은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는 고지에 입각한 동의에 따라 자발적으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또한 피해자는 절차에 대한 완전하고 공평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갖는다. 공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토의는 기밀로 유지할 수 있다. (단, 피해자와 가해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또는 협박이나 폭력행위 등 공익이 우선시 되어정보가 공개되어야 할 경우는 제외한다)

2.20 유럽 보호명령은 피해자가 회원국에 체류하거나 거주할 경우, 피해자가 거주하거나 방문하는 특정 지역에 대한 출입금지 또는 피해자와의 접촉 (전화와 서신 포함)에 대한 금지나 통제 등 인신매매범에 반하는 보호조치가 내려졌을 경우 내려질 수 있다. 유럽 보호명령은 유럽연합의 한 국가의 형법 하 보호 조치를 피해자가 이동한 기타 유럽연합 국가로 확대하여 적용함으로써 적용된다.

2.21 증인이거나 다른 방법으로 절차에 관련된 피해자들이 형사 소송 절차의 각 단계에서 그들의 참여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회원국들은 의사소통의 어려움 (예를 들어 다른 언어를 구사하거나 장애물이 있을 경우)을 최소화해야 한다.

**아동 피해자**

2.22 아동 피해자와의 인터뷰는 정당하지 않은 지연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 피해자는 필요할 경우 해당 목적으로 계획되었으며 해당 목적에 부합하는 인터뷰를 받을 수 있다.

2.23 아동 피해자와의 인터뷰는 가능하면 같은 인물에 의하여 진행되어야 하며, 인터뷰의 수는 가장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범죄 수사와 절차에 필수적일 경우에만 이루어져야 한다. 피해자는 동반인 선택의 타당성에 반하는 합리적인 판단이 부재할 경우에만 대리인 혹은 (적절할 시) 아동이 선택한 성인을 동반할 수 있다.

2.24 아동 피해자를 포함한 공판은 대중과 아동의 직접적인 참석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의 의견은 기타 적할한 통신 시설을 이용하여 표명할 수 있다 (화상연결 등)

2.25 회원국들은 아동 피해자의 신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의 공적 파급을 막을 수 있다.

2.26 가능한 각 사건의 상황에 따라, 피해자가 아동일 시에는, 회원국들은 가해자(들)의 기소를 아동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연기할 수 있다.

|  |
| --- |
| 제3장: 보상3.1 피해자들은 현존하는 폭력적이고 고의적인 범죄에 관한 보상제도에 접근할 권한을 가진다.*3.2* 회원국들은 형사 소송 절차 중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촉진하여야 한다.3.3 피해자들은 국법이 기타 소송절차에서 판결을 구할 것을 명시하지 않는 한형사 소송 절차 중 상당한 기간 내에 가해자의 배상에 대한 판결을 구할 수 있다.3.4 피해자들은 형사 절차 중 점유된 고유재산을 지체 없이 반환 받을 수 있다. (단, 고유재산이 형사 절차를 위해 긴급히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국가간 상황에서 보상제도에의 접근**3.5 피해자들은 상거소가 위치한 회원국에서 범죄행위가 일어난 회원국에서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3.6 피해자들은 보상 청구의 가능성에 대한 필수 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이는 신청이 어떻게 완료되어야 하며, 어떤 신청서가 요구되는지와 보충 정보 요청에 대한 정보와 안내를 포함한다.3.7 피해자들은 조속히 그들의 보상 청구담당 직원 또는 담당 부서에 대한 정보, 신청서 접수에 대한 통지, (가능하다면) 신청에 대한 판결이 내려질 시일, 그리고 내려진 판결에 대한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제4장: 통합과 노동권**

4.1 유럽연합의 시민들은 유효한 여권 또는 신분증명서를 지녔다는 조건 하에 최대 3개월까지 회원국의 영토 내에 머물 권리가 있다.

4.2 유럽연합의 시민들은 합법적인 일자리를 갖거나 인가된 교육시설에 재학 중일 경우 종합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또는 본인 혹은 그 가족들이 해당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에 짐이 되지 않을 것을 보장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자금을 소유할 경우) 유럽연합 내 어디에서라도 머물 권리가 있다.

4.3 모든 유럽연합의 시민들은 교육의 권리를 가지며, 직업 훈련과 평생 연수에 대한 접근권을 갖는다.

4.4 모든 유럽연합의 시민들은 직업을 선택할 자유가 있으며, 모든 회원국에서 업무에 종사할 권리가 있다. (단, 어느정도 제한을 받는다)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제3국의 국민들은 유럽연합의 시민들과 동등한 근무 환경을 제공받을 자격이 있다.

4.5 모든 노동자들은 그들의 건강, 안전, 존엄성을 존중하고 최대 근무 시간의 제한이 있으며, 일간과 주간의 휴식 시간과 연차유급휴가를 보장하는 공평하고 평등한 근무 환경에 대한 권리가 있다.

**제3국 국민**

4.6 회원국들은 체류 허가증을 지닌 제3국 국민 피해자가 노동시장과 직업 훈련과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갖는 경우 이는 체류 허가증의 유효기간에 한한다는 법안을 제정하여야 한다.

4.7 제3국 국민인 피해자들은 피해자들의 일상으로의 복귀를 목표로 하는 현존하는 계획이나 제도에 접근권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계획과 제도는 전문 기술 양성이나 출생지로의 복귀 지원 준비를 포함한다.

*4.8* 제3국 국민인 피해자들은 그들이 거주하는 회원국의 국민과 업무 환경에서 관하여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임금 지불과 해고 및 업무현장에서의 건강과 안전, 단체 결사의 자유, 교육과 직업 훈련, 학위의 인정, 증명서와 관련 국내 제도에 따른 기타 전문적 자격증, 사회보장 그물체계, 세금 혜택, 재화와 용역에 대한 접근권과 국법에 명시된 주택취득 절차를 포함한 대중이 이용가능한 재화와 용역에 대한 공급을 포함한다.

4.9 불규칙적으로 머무는 제3국 국민인 피해자들은 직접 또는 노동조합 혹은 협회 등의 제3자를 통하여 고용주를 고소할 수 있다.

4.10 불규칙적으로 머무는 제3국 국민인 피해자들은 피해자가 출신국으로 돌아갔다고 하더라도 미불 보수 (임금)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다. 피해자들은 송환 판결의 집행 전에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그들의 권리에 대해 통지 받아야 한다.

4.11 보수의 정도는 당사자들이 다르게 입증하지 않는 한 최소한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임금에 상응해야 하며, 단체협약에 의거하거나 관련 직업군의 관례에 따라야 한다.

4.12 불규칙적으로 머무는 제3국 국민인 피해자들은 고용주에게 청구하여 결과적으로 미불 보수 지급 집행 판결을 요구할 수 있다.

**아동 피해자**

4.13 제3국 국민인 아동 피해자들은 상당한 기간 내에 자국의 아동들과 동일한 조건 하에서 교육제도에 접근권을 갖는다.

🡪 4장은 EU회원국 시민 또는 제3국 시민에게 주어지는 일반적인 권리(거주권, 노동권, 교육권 등)

**제5장: 제3국 국적 피해자를 위한 숙려기간과 거주 허가**

**숙려기간**

5.1 인신매매의 피해자인 제3국 국민들은 숙려기간을 가질 수 있다. 이는 피해자들이 회복하고 가해자들로부터의 영향에서 벗어나 경찰 및 사법당국과 협조할 것인지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5.2 피해자들은 숙려 기간 중에는 추방당할 수 없다.

5.3 피해자가 가해자와 계약을 갱신한 경우, 또는 공공정책과 관련된 이유 및 국가 안보의 보호를 위한 이유로 숙려기간은 종료될 수 있다.

5.4 피해자들은 최소한 응급치료와 숙려기간 내 가장 취약한 이를 위한 심리적 서비스를 포함한 특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거주 허가**

5.5 제3국 국민을 위한 숙려 기간이 종료되면, 피해자는 아래의 조건에 따라 거주허가를 위한 고려대상자가 될 자격이 있다.

\* 피해자가 조사와 사법 절차를 위하여 필요한가

\* 협조를 위한 명백한 의도를 보였는가

\* 피해자의 인신매매에 대한 책임자들과 모든 관계를 단절하였는가

\* 공공질서와 공공정책, 공공안전에 어떠한 위험 요소도 제공하지 않는가

거주허가는 최소 6개월 이상 유효하여야 하며 위와 동일한 조건 하에 연장될 수 있다.

5.6 거주허가가 주어지면, 충분한 재력이 없는 피해자도 연명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수준, 응급치료에 대한 접근권과 적절할 경우 번역 통역 서비스를 보장 받을 수 있다.가장 취약한 이를 위한 심리적 서비스 등과 같은 특수한 수행은 보장되어야 한다. 안전과 보호에 대한 필요 또한 국법에 의거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은 국법에 의거하여 무료 법률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

5.7 피해자가 인신매매에 대한 책임자들과 계약을 갱신할 경우, 피해자의 협조가 기만적일 경우, 또는 기소가 기만적이거나 잘못된 경우, 공공 정책과 국가 안보에 위험 요소를 제공할 경우, 피해자가 협조를 중단하거나 관련 당국이 절차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경우 피해자의 거주허가는 철회될 수 있다.

**장기 거주자**

5.8 제3국의 국민이며 회원국 내에서 최소 5년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한 피해자는 장기 거주자 자격을 가질 수 있다. 이는 피해자가 사회 보장제도 또는 질병보험 없이 본인과 그 가족들을 부양할 충분한 재력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

제6장: 송환

6.1 제3국 국민인 피해자가 유럽연합에 체류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따라서 출신국으로 송환되어야 할 경우, 피해자에게는 보통 7일에서 30일 사이의 자진 출국 기간이 허용된다.

6.2 가족, 사회 관계 혹은 재학중인 아동과 체류기간 등 특정 상황을 참작할 경우 자진 출국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6.3 거주가 허가되었으며 경찰 및 사법당국과 협조한 인신매매의 피해자들은 복귀 의무에 따르고 공공 정책과 안보에 위협을 가하지 않는 경우 특정 기간 동안 유럽연합 회원국 입국이 금지될 수 없다.

6.4 피해자는 언제라도 필요할 경우 법률 상담과 대리, 통역을 동반하여 당국에 항소할 수 있다.

6.5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이 침해되었을 경우 이송은 연기되어야 한다. 이는 개인의 기타 특정 상황을 고려한 다른 이유로도 연기될 수 있다.이러한 이유는 특히 피해자의 신체 상태나 의사 능력, 또는 수송능력이나 피해자 신분증명 불가 등의 기술적인 문제를 포함한다.

6.6 유럽연합의 재입국협정에 서명한 국가들은 자동적으로 그 국민들과 그들의 (미혼) 아동 및 배우자, 또는 유효한 비자나 거주허가증을 지니거나 지녔던 자들의 재입국을 허용하여야 한다.

**아동 피해자**

6.7 부모 혹은 보호자를 동행하지 않은 제3국의 국민인 아동 피해자는 아동 최선의 이익이 고려되었으며회원국이 아동이 가족, 지정된 보호자 또는 적절한 수용 시설로 복귀하는 것에 대하여 만족할 경우에만 송환될 수 있다.